

코로나19 대응을 위한  
2021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및  
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 계획



**시 흥 가 온 중 학 교**  
**[교 무 기 획 부]**

## I 추진 개요

- (목적)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하고, 전국 공통의 학생평가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방안 마련
- (적용 시기)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

## II 근거 법령 및 주요 지침

- 교육과정 관련
 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제2항(교육과정 등), 제24조제3항(수업 등)
  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8조제4항(수업 운영방법 등)
  -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(교육부 고시 제2020-248호)
  - 신학기 휴업에 따른 전국 초·중·고,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안 안내(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-2248, 2020.3.20.)
  - 2021학년도 초·중·고·특수학교 등 원격수업 운영 기준(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-476, 2021.1.28.)
- 출결, 학생평가, 학생부 기재 관련
 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(학교생활기록)
  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1조부터 제25조
  -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(교육부 훈령 제365호)

### 【교육부 훈령 제365호 [별표8] (출결상황관리 등)】

4.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**원격수업**(방송·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) 수강학생 처리  
가. **학교의 장**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(목)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4조 제3항제1호의 **원격수업**으로 실시한 경우 **출결 및 평가,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**

-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알림(학교교육과정과-2130, 2133, 2021.2.5.)

○ 감염병 예방 관리 관련

-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2차 개정판(교육부, 2016.12.)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(10판)(중대본, 2021.5.17.)
-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(중수본, 2021.6.28.)
- 유·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5판)  
(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6189, 2021.7.19.)

**III 기본 원칙**

○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방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모든 단계에 **동일 적용**

《 **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등교 원칙 기준[ '21.8.10.]** 》

 유·초·중등학교 2학기 학사운영 방안 안내 /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-13415(2021.8.10.)

**<개학일(8.14.[토] 이후) ~ 9월 1주[9.3.[금]]>**

단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등교 원칙	전면 등교	전면 등교	(중) 2/3 등교 (고) 고1·2학년 1/2* 등교~전면등교	(중) 1/3 등교 (고) 고1·2학년 1/2* 등교
기타 사항	- 돌봄,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,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- 유·초1,2·특수학교(급), 고3은 학교 밀집도 제외			

\* 고 1·2 1/2 등교 시, 밀집도 예외인 고3을 포함한 2개 학년 등교

\*\* 소규모·농산어촌학교는 1~3단계 전면등교 원칙(단, 학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별 기준 적용 가능), 4단계 학교급별 기준 적용

※ 소규모학교: 1학기과 동일하게 300명 이하+301명~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평균 25명 이하  
농산어촌학교: 「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에 따른 학교

**<9월 2주[9.6.[월]] ~>**

단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등교 원칙	전면 등교	전면 등교	전면등교 가능 (중 2/3 이상 등교, 고 전면등교)	(중) 2/3 등교 (고) 고1·2학년 1/2* 등교~전면등교
기타 사항	- 돌봄,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,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- 유·초1,2·특수학교(급), 고3은 학교 밀집도 제외			

\* 고 1·2 1/2 등교 시, 밀집도 예외인 고3을 포함한 2개 학년 등교

\*\* 소규모·농산어촌학교는 1~4단계 전면등교 원칙(단, 학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별 기준 적용 가능)

※ 소규모학교: 1학기과 동일하게 300명 이하+301명~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평균 25명 이하  
 농산어촌학교: 「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에 따른 학교

- 등교수업 시 학교 내 밀집도 및 학생 간 밀접 접촉 최소화
-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학교 시설 이용제한조치 등은 코로나19 대응지침(중대본) 및 감염예방 관리 안내(교육부)에 따라 실시
-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학교 시설의 이용제한이 발생할 경우를 원격수업으로 전화하여 실시
  - ※ 개인 단위 등교중지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시간 수업
  - 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장 관련 안내 / 학교교육과정과-9940(2021.6.24.)
- 등교수업 시 코로나19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, 확산방지 조치 후 수업 실시

#### IV 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



- (① 운영 계획 수립) 교과별 협의회 등에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의 출결·학생평가·학생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, 원격수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

- (출결) 원격수업 유형별·교과별 출결 확인 계획\* 수립

\*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, 출결 확인 시기를 포함한 인정 기준, 출결 기록 및 관리 방법, 결석 사유 및 출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종류 및 제출 기한 등 포함

- (학생평가 및 학생부) 평가계획 수립,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관찰 및 피드백 제공 방안 마련, 누가기록 방안 마련 등
- (②사전 안내) 학교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'학교 운영 계획'을 학생·학부모에게 안내하고, 담임교사는 학급방 등을 통해 학생 관리
- (③학사 운영) '학교 운영 계획'에 따라 출결, 평가, 학생부 기재 운영·관리
  - ※ 원격수업 시, 개별 학생의 학습 참여도 확인을 위한 유·무선 확인 등 학습 관리 실시
- (④결과 처리)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시 누적 관리한 출결·평가 결과 최종 처리 및 학생부 최종 기재

## V 출결 관리

### [ 원격수업 ]

- 기본 원칙 - **본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원칙**



- (출결 확인)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, 3일 (수업일 기준, 휴업일 제외) 내 최종 출결 확인
-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(교과별 해당 시간)이 원칙이며(수업시작 15분 이내에 수업에 참여해야 출석으로 인정),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

※ 원격수업은 각 가정에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가정 이외의 장소에 참여할 경우 출석은 인정하되 1차 사안 발생시: 담임교사 지도, 2차 사안 발생시: 학년부 지도(성찰교실)를 받음.

-각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발생시 해당 학생이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허가를 받음.

(단 사전 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함)

※ 출결 확인 기간(3일)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

○ (출결 기록)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(출석부) 또는 교육정보시스템(NEIS)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(결과)으로 기록

-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

○ (출결 처리)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(출석부 등)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(7일) 단위로 종합하여 월(月)단위 출결(마감) 처리\* 가능

\* 교육정보시스템(NEIS)을 통해 처리하되,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출결(마감)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 결정 가능

**【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】**(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-6154, 2020.8.19.)

• 학급단위\*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(수업)으로 처리

\*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포함 (예: 홀수 번호 원격수업, 짝수번호 등교수업)

•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제공한 대체학습 및 실시간 수업 참여는 출석 인정 결석 처리

•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(수업)으로 처리

○ (실시간 조·종례) 실시간 조·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(NEIS) 출결 관리와 별도로 운영(NEIS에 반영하지 않음)

※ 교육정보시스템(NEIS) 조·종례 출결 관리 방법(중등): 조회(종례)는 '결석'처리 또는 1교시(마지막 교시) 불참자의 '지각(조퇴)' 처리 시에만 결과 처리

**[실시간 조·종례 운영]** ※ ‘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육안전망 안착 지원 방안’(20.9.15.)’

- (방식)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(SNS) 등을 활용
  - \* 화상 기반 프로그램(플랫폼 또는 학습플랫폼)에서 제공하는 그룹대화방 등
- (내용) 출결 및 건강상태 확인,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 등을 주제로 소통
- (미참여 학생) 전화 또는 개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(SNS) 등을 통해 조·종례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 파악

- (유의사항)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‘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’ 이외 ‘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\*을 수강한 경우,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 처리 불가
  - \*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(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분반 포함)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‘등교일’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

### □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·인정 방법

- 원격수업에는 실시간 쌍방향 (화상)수업,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,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이 포함되며, 교사-학생 간, 학생-학생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확인·인정, 처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출결을 확인(인정)하고 기록함
- 학교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도교육청 원격수업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함
  - ※ 단, 출석 확인(인정)기간\*은 학교에서 임의 변경 불가(전국 공통)
  - \* 실시간 쌍방향 수업: 당일, 이외 유형: 원칙적 당일(최종 3일 내)
- 공공 LMS 플랫폼 내 학급방, 출결증빙 자료 등은 해당 학년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학년도 종료 시 일괄 삭제됨(필요 자료 학년도 종료 전 다운로드)
  - 출석부 등 보조장부 또는 교육정보시스템(NEIS)에 출결기록 관리 철저

#### <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(예시)>

수업 유형	출석 확인 방법								
	실시간	LMS 활용 방법*					기타(대체 확인)		
	교사 확인	학습 시작일	진도율	접속 기록	학습 시간	산출물 탑재	SNS/ 메시지**	대체 학습	증빙 자료
실시간 쌍방향	○	○	○	○	○		○	○	○
콘텐츠 활용		○	○	○	○	○	○		○
과제 수행		○	○	○	○	○	○		○
확인(인정) 기간	당일***	원칙적으로 당일(최종 3일(수업일 기준) 내)							

\* e학습터, ebs클래스, 클래스팅, 구글 클래스룸, 네이버밴드, 카카오톡, MS팀즈 등

\*\* 실시간 쌍방향 수업: 접속불가 사실 소통(대체학습 부여) / 이외 유형: LMS 활용이

어려운 경우 수강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
 \*\*\* 접속 불가 등의 사유로 대체학습을 부여한 경우 3일(수업일 기준) 내

### <공공LMS 플랫폼 출결 관련 개선 사항>

- **(실시간 화상 수업)** 학생들의 실시간 접속 현황 및 수시 참여 확인요청 기능을 제공하고, 수업 종료 후 수업참여 결과(확인요청 응답 횟수, 접속 시간 내역 등)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
- **(콘텐츠 및 과제중심 수업)** 각 과목의 학생별·강의별 수강 이력 확인 기능 제공

#### ○ 실시간 쌍방향 수업

- **(확인·인정 방법)** 교사가 플랫폼 화면, 실시간 댓글(플랫폼, 별도 학급방)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(참여)여부 확인(인정)
- **(대체 확인 방법)**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접속이 불가능한 학생은 대체학습을 제시(당일)하여 그 이행결과를 근거로 출석 확인·인정
  - ※ SNS,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접속 불가 사실 확인 후 대체학습을 부여한 학생에 한하여 출석 처리 가능

#### ○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

- **(확인·인정 방법)**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활용해 학습시작일, 진도율,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·인정
  - ※ ‘출결 처리’를 위한 이수 기준은 원격수업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(미충족 시 ‘결석(결과)’ 처리)
  - ※ (참고-이수기준) ▲ 방송통신 중·고등학교: 80%, ▲ e-학습터: 60%, ▲ 온라인 수업(전·출입 등에 따른 미이수과목, 도서·산간 지역 미개설 과목): 70%
- **(대체 확인 방법)**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, SNS, 유선전화, 문자메시지 등 활용

#### ○ 과제 수행 중심 수업

- **(확인·인정 방법)** LMS를 활용한 접속 기록,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 확인·인정
- **(기타)** 과제 인정 기준(인정 수준, 분량)은 교과영역의 특성과 학생의 수준을 감안하여 교과별로 별도 마련

#### ○ 기타 유형 수업

- **(확인·인정 방법)**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원격수업을 설계하고 학교장이 정한 출석 인정 기준, 출석 인정 증빙 자료, 제출 기한에 따라 확인 및 기록

## □ 학생 관리

- (대체학습 대상 학생) 학생의 장애,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\*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 학습 이행 결과\*\*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

각 교과 교사가 대체학습 대상 학생의 이메일과 SNS를 통해 대체 학습 자료 제시

\* 장애학생, 지리적·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

\*\*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,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

※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,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인정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한 해당 수업의 출석 처리가 불가능함

- (등교중지 대상 학생) 원격수업 기간에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원칙임

※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, 코로나19 임상증상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(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)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결석 처리

- 단,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본인의 등교 수업일에 희망에 따라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\*을 수강한 경우,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(수업)으로 처리

\* 학생이 속한 해당 학급의 수업을 들을 때만 유효하며, 다른 반이나 학교의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

### <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중 등교중지 학생 출결 예시>

- (예1) 전면 등교수업 운영 중인 A학교의 등교중지 학생 홍길동: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,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인정결석
- (예2) 전면 원격수업 운영 중인 A학교의 등교중지 학생 홍길동: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, 결석할 시 출석인정결석
- (예3) 짝수 번호는 등교수업, 홀수 번호는 원격수업 운영하는 A학급의 등교중지 학생 홍길동(짝수 번호):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,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인정결석. 다만, 학생의 희망에 따라 A학급의 홀수 번호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수강하였을 시 출석처리함
- (예4) 짝수 번호는 등교수업, 홀수 번호는 원격수업 운영하는 A학급의 등교중지 학생 홍길동(홀수 번호):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, 결석할 시 출석인정결석
- (예5) 1반은 등교수업, 2반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A학교의 1반 학생 홍길동이 등교중지 대상일 경우: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인정결석이며 2반의 원격수업을 들어도 이를 출석처리하지 않음

- (장기결석 학생 관리)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①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, ②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정보시스템(NEIS)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

※ 근거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, 제92조의2 ②항

## [ 등교수업 ]

❖ 교육부훈령 제365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,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

※ 코로나19로 인해 **학교·학년·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,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** (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시 당일부터 일과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,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

※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,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'코로나19로 미등교(00일)'로 기재 (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)

- (등교중지 대상 학생) 특정 학생이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'출석인정결석' 처리

※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, 해당일은 '출석인정 조퇴' 처리

**【등교중지 대상 학생】**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 증빙자료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원치료통지서*</li> <li>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 [별지 제 22호 서식]</li> </ul>
격리 통지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격리통지서</li> </ul>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*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거인의 격리통지서</li> </ul>
	<p>&lt;유의사항&gt;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</p> <p>- 다만,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, 1) <b>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*</b> 학생의 진단검사(PCR검사)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) 격리통지를 받은 '즉시'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</p>	
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</li> </ul>
	<p>&lt;유의사항&gt;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</p> <p>- 다만, 선제검사(병원·항공 등 직업특성, 대회참여, 이동검체검사 등)의 경우 적용 제외</p>	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** (임상증상 발현 학생)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	<p><b>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, 문자 통지 사본 등)</li> </ul>

※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,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

**« \*\*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등교 기준 »**

- ※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[제5판] (2021.7.19.) 39쪽 참고
- (기본원칙) **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·검사 받기**
    -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,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
  - 임상증상학생\*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,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(1)선별진료소의 검사(진료)결과와 2)증상에 대한 의사소견(진단서\*\*)를 확인\*\*\* 후 등교 허용 가능
    - \*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
    - \*\*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,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
    - \*\*\*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,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·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,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

- **(고위험군학생)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(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장애\***를 가진 학생의 경우, **‘출석인정 결석\*\*’ 또는 ‘질병결석\*\*\*’** 처리
  - \* 보건복지부의 ‘장애복지카드’ 소지자에 한하며,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
  - \*\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([참고1] 참조)가 “심각, 경계”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  - \*\*\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관심, 주의”단계이며,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 또는 문자 등)한 경우
  - 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(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)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및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
  - ※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
- **(기타 미등교학생)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‘기타결석’** 처리
  - \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  - ※ “심각, 경계”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(기정학습) 신청 시 ‘출석인정결석’ 처리 가능(16쪽 참조)
  - ※ (유의사항)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·졸업 불가함
- **(인플루엔자 예방접종)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**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결석**** 처리
  - **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, 원격수업(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)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**
    - ※ 단, **학교의 지필·수행평가 기간(시간)은 미인정 결석(결시) 처리함**
    - ※ 증빙서류: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
- **(코로나19 백신 접종) 이상반응\* 발생 시 접종 후 1~2일은 진단서 불필요한 출석인정결석,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결석**
  - \* 근육통, 발열, 두통, 오한, 메스꺼움, 어지러움, 접종부위 반응, 알레르기 반응, 구토, 관절통, 복통, 설사 등
  - ※ 접종 후 1,2,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. 예)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,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
  - ※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, 부득이한 사유로 **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(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)**
  - ※ 평가기간 중에는, **접종 후 1~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함**
  - **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, 원격수업(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)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**

**«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»**

	접종일	접종 후 1~2일	접종 후 3일~
<b>출결</b>	단체 접종 시 학사일정에 따른 개인 접종 시 출석인정결석	출석인정결석	질병결석
<b>평가</b>	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	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	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
<b>증빙 자료</b>	예방접종내역 확인서, 예방접종 증명서	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, 학부모 의견서, 담임교사 확인서 등	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소견서, 진료확인서,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)

※ 평가 기간의 경우,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

- (교외체험학습)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 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

※ 사전 신청서(학습계획서) 제출,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

※ 단, 가정학습의 인정 기간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함

**[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\* ]**

-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

※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

## **VI 교수 · 학습**

- **코로나19 지역 감염상황, 학교별 방역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에 규제가 되는 요소\*들을 정비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임(2021학년도 2학기 중)**

\* (기본원칙) 도서관, 과학실 등 특별실 공동 사용 최소화, 등교수업 시 학습 도구 등의 공동 사용 자제 (자율활동) 등교수업 시 가급적 교내 방송시설을 활용하고, 대면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참석인원, 행사 공간, 진행방식 등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함 / 수학여행, 수련활동, 학교축제 지양함 (동아리활동) 밀폐된 공간 내 활동을 자제함

(봉사활동) 봉사활동 소양교육 또는 사전교육을 원격으로 실시함 /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차원의 실내봉사활동을 지양함

(교내대회)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자제함

※ 상기 제시한 목록은 예시(안)이며, 추후 별도 안내 시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기본 원칙

- (밀집도 최소화)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고,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\* 및 강화된 방역 계획\*\* 마련

\* △학년·학급별 시차 등교, △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, △학급 단위로 오전/오후반 운영, △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

\*\* △학년별·학급별 등하교·수업·급식 시간 등을 분리, △등하교 출입구, 급식실 이동 경로 등 분리, △도서관, 과학실 등 특별실 공동 사용 최소화 등

### ※ 탄력적인 수업시간 운영

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수업시간 준수가 원칙이며, 학교별 방역 상황, 급식 여건,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별 수업시간 탄력 운영 여부 결정

- 1차시 5분 이내 감축할 시에는 보강 없이 탄력적 수업시간 운영 가능
- 학생들의 휴식 시간 보장 준수
- 학부모 이해를 위한 사전 안내 철저

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방안 안내 /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-9670(2021.6.18.)

- (밀접 접촉 최소화) 등교수업 시 학습 도구 등의 공동 사용을 자제하고, 학생 간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유의

-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\*하고, 학급 내에서 학생 간 최대 거리를 확보하여 책상을 배치함

\* ‘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’ 및 ‘마스크 착용 중 이상반응(호흡곤란, 어지러움, 두통 등)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침’은 ‘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’ 준수

- 모둠활동 운영 시, 감염 우려가 없도록 학생 간 거리를 확보하고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자제

- (개인위생 교육)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상시 교육 실시

- 창문 수시 개방, 개인책상 및 개인물품 소독하기, 마스크 착용, 손 씻기, 기침 예절 지키기, 의심 증상 발현 시 바로 말하기 등

- (수업방식 혁신) 기존 교실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, 원격수업-등교수업 간 혼합 수업(블렌디드 러닝) 및 온라인 도구와 플랫폼을 활용한 교실수업 등 온·오프라인을 연계한 방식 도입 권장

- (역량함양 수업) 토의·토론 수업 및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방법 운영 활성화

### 역량 중심 수업 운영 사례

❖ **교과(통합사회)** - 실시간 쌍방향 모둠별 토의 수업(합리적 의사결정모형)

- (주제) 인권 기반의 사회 정의 실현 방안
- (방법) 패들렛(온라인 포스트잇 활용) 활용 브레인라이팅 수업→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실시간 쌍방향 모둠 토의 → 피드백(허니컴 프로그램의 보드 활용) 및 학습 노트 작성

• (역량)

합리적 의사결정



의사소통역량



공동체 역량

- (맞춤형 피드백 제공) 수업 중 형성평가를 활용한 학습 수준 진단, 참여도·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개인별 피드백 제공 활성화

## □ 교과 활동

- (교과 수업)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한 혼합 수업을 내실화하여, 학생의 활동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 강화
- 등교수업 시 토의·토론 등의 소통이나 실험·실습 등의 기자재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, 비말이나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수업 실시
- (방역 강화) 교과교실제 등 학교 내 이동 수업,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수업 전후 교실 방역 및 물품 소독 등 관리 철저
-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시, 자기주도학습역량을 키우는 학생 참여 중심의 토의·토론,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운영

## □ 창의적 체험활동

- (자율활동)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한 학생 활동 실시
- 등교수업 시 가급적 교내 방송시설을 활용하고, 대면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참석인원, 행사 공간, 진행방식 등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
  - ※ 학급활동(반장선출, 담임선생님과 자체활동)안전교육·성교육·생존훈련·대피훈련 등
- 대규모 단체 활동 및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방역조치를 이행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 참여
  - ※ 수학여행, 수련활동, 학교축제 등은 감염병 위기단계 ‘심각’, ‘경계’인 경우 지양
- (동아리활동) 대면·비대면 방식, 블렌디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아리활동을 실시하고, 대면활동 시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후 실시
- 밀폐된 공간 내 활동 자제, 실습이나 집단 활동의 경우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동아리활동 장소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 등
- 가급적 학교 외 활동을 자제하고, 외부강사 출입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 및 발열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여 안전 확보
-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별 소규모로 이론·실기활동을 병행 운영하되, 방역지침(1m이상 거리두기 등) 준수

- ※ 학생 간 체육복을 빌려 입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, 학생 간 접촉 방지를 위해 탈의실 이용 시간을 충분히 확보
-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, 학생 요구 등을 반영하여 **대면, 비대면, 혼합**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
  - ※ 비대면 방식: 시공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운동 종목 기술의 숙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영(예: 줄넘기 이중 뛰기, 농구 자유투, 축구 리프팅 등)
- **(봉사활동) 필요 시 봉사활동 소양교육 또는 사전교육을 원격으로 실시하고, 봉사시설(장소), 봉사내용 등을 검토하여 학생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「봉사활동 계획서」 학교장 사전 승인**
  - ※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·학부모에 안내
- 외부기관 방문 자제,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차원의 실내봉사활동 지양하며, 선플달기 등 비대면 봉사활동 활용 가능

**<<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기준(예시) >>**

- ▶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**봉사활동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 가능**(실시간 쌍방향, 영상·사진 저장 등)
- ▶ 봉사활동 **실천과정의 사진·영상 등**(시작 전·실천 중·마무리)이 포함된 **활동보고서** 제출
- ▶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확인 필요
- ▶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상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(무보수성·자발성·공익성·비영리성·비정파성·비종파성) 충족

 개별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는 '융합교육정책과-1263(2021.02.03.)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알림' 참고

- 코로나 지속 상황을 고려, 시도교육청별 **고입전형 기준 내 봉사활동 시수, 배점·반영비율 등 적정 조정\*** 권장
- **(진로활동) 진로체험학습은 체험 유형 및 방법\*, 참석인원, 체험공간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**
  - \* 진로체험유형: 강연·대화형, 현장견학형, 직업실무체험형, 현장직업체험형, 학과체험형, 진로캠프형
- 숙박형 프로그램은 자제하고, **가급적 비숙박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**
- **원격수업으로 진로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등교수업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플랫폼 및 교육자료\* 적극 활용**
  - \* 등교·원격 수업 연계형(블렌디드) 진로교육 콘텐츠(초·중·고 각 32차시) 개발·보급

※ (예시) 온라인 진로교육활동 사례: △원격영상 진로멘토링(<https://mentoring.career.go.kr>)을 활용한 진로멘토링 수업, △진로심리검사 및 온라인 진로상담(<https://career.go.kr>), △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(<https://yeep.kr>)을 활용한 창업동아리 활동 등

※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의 '교과 활동' 또는 '창의적 체험활동'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운영

○ 원격수업 전면 전환 시, **비대면(원격수업)이 가능한 활동**(동아리활동, 진로활동 등)에 한해 **원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** 실시

※ (원격 동아리활동 예시) 가상 박물관체험(VR, 영상, 사진자료 등)을 통한 역사 문화 홍보자료 제작 등 우리역사바로알기 역사동아리 활동 등

## □ 기타

○ **(교외체험학습)*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

※ 사전 신청서(학습계획서) 제출,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

※ 단, 가정학습의 인정 기간은 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함

### [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]

○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(허가)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

※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

※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학교 61쪽, 고등학교 58쪽

○ **(교내대회)**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 후 실시 가능

-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고, 단체 활동으로 구성된 교내 대회의 경우 일정거리 확보 등 준수

- 비대면으로 교내대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,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,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\* 활용

\* 쌍방향 화상 수업, 학생의 수행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등

※ 비대면 대회 시, 학생의 활동 결과물 등 증빙 자료 보관 필요

○ **(학생 상담)** 전문상담(교)사는 상담 수요조사 또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파악하여 상담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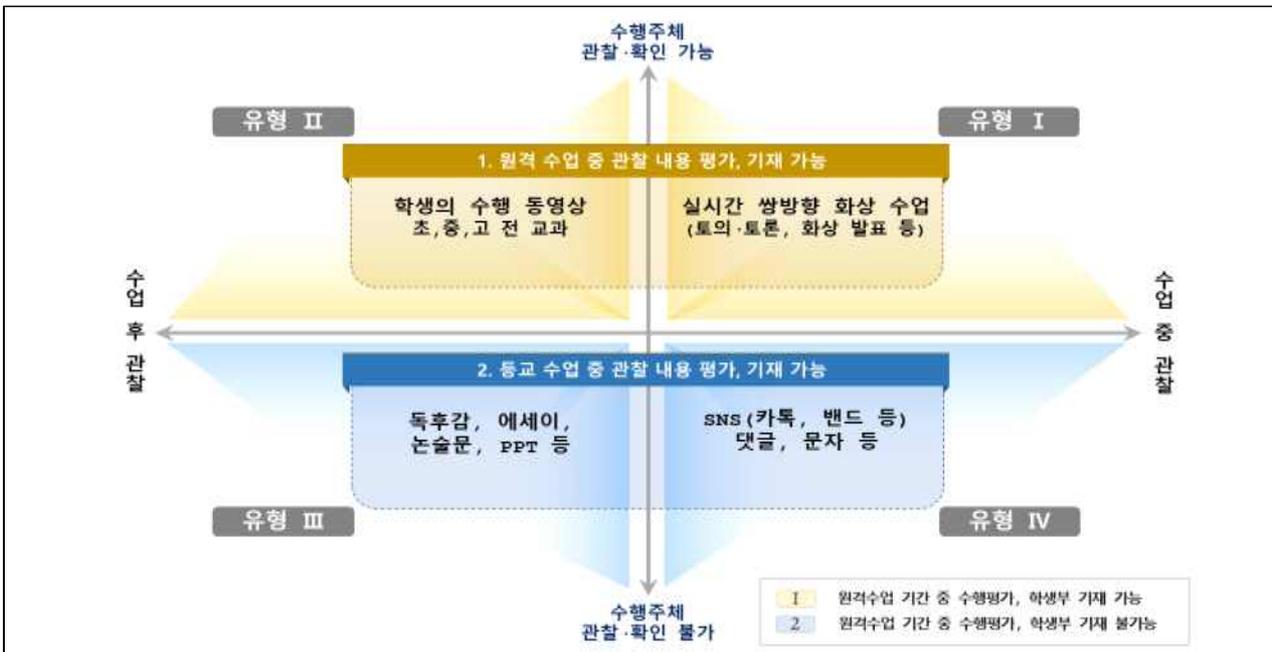
※ 전문상담(교)사 미배치 학교는 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, 위(Wee)센터 및 지역 내 전문 기관을 연계하여 상담 지원

- (격리학생 심리지원) 불안, 우울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경우 위(Wee)센터,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외부 전문 상담기관 연계
- 격리 경험을 이유로 따돌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구성원을 대상으로 배려·공감 교육 실시
- (소통강화) 원격수업 시 실시간 조·종례 등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-학생,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적 함양 및 정서발달 도모
  - ※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한 학급회의, 학생자치법정 등 사례 발굴·공유('20.9.~)

## VII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

### □ 원격수업 학생평가·학생부 기재 원칙

<학생평가, 학생부 기재 개념도>



-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·확인하여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
  -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·토론, 화상 발표 등(유형 I),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(유형 II)으로 평가·기재 가능
-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·확인하지 못할 경우 등교수업에서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
  - 원격수업에서의 학생 활동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

## 관찰·확인한 내용을 평가·기재 가능(유형Ⅲ,Ⅳ)

※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하지 못한 학생 활동은 평가·기재할 수 없음

### [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예시 ]

-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시 실시한 토의·토론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사항을 바탕으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-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생활체조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하여 자세 및 순서 정확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- 등교수업에서 '비평의 기법'에 대해 지도하고, 원격수업 중 작성한 독후감을 수정·작성 및 발표하게 하여 교사가 관찰·확인한 이해도,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- 원격수업 시 댓글을 활용하여 창작한 모둠별 단편극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시한 모둠별 단편소설 창작 활동에서 교사가 관찰한 창의성, 협동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
## [ 학생평가 ]

### □ 기본 원칙

- (학생평가)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,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·확인하고, 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

※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

- (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)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(산출식)을 마련하고, 학생·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필요

- (평가운영 조정)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 조정, 지필평가 횟수 조정, 수행평가 반영비율 조정 등을 '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'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

※ 공정한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사전 확보 노력 요망

※ 수립(변경)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

- (결시생 성적처리) 경기도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

※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(인정점 부여)하는 것이 원칙임

※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(예: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, 진료확인서,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)

☞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(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)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

※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필(수행)평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,

부득이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지필(수행)평가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(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)에 따라 인정점 부여

○ 지필 평가

- (횟수 조정)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, 형평성 등을 감안해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
- (고사장 운영) 학년·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,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급원을 분리 배치하거나 학년별 고사시간 분리 운영 권장

○ 수행 평가

- (비율 조정) 성적 반영 비율 등은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
- (안전 확보)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거나 **비말 발생**이 우려되는 평가(모둠형 수행평가 등)는 **지양**하되, 불가피할 경우 **방역 강화** 등 조치 후 실시
- (시기 분산)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간 내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실시 권장

## [학생부 기재]

### □ 기본 원칙

- (학생부 기재)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
  -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, 원격수업의 내용(또는 과제 내용)과 등교수업에서 학생을 관찰·평가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 가능(원격수업(또는 과제) 내용만을 단독으로 입력 불가)
  - ※ 각 항목의 기재 방법 등은 '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' 준용
- (기재 내실화)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계획·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 확보
  - ※ 예) 원격수업 시 관찰 가능 유형(I·II)을 포함하여 운영, 원격수업과 연계하여 등교수업 시 학생참여형 수업 실시 등

## □ 운영 방안

- (교과활동) 원격수업과 등교수업, 수행평가 등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
- (창의적 체험활동)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\*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(교사 관찰여부와 무관)
  - \* 기재요령(중 82쪽, 고 85쪽) 참조(예: 학교폭력 예방교육 2회(3.25. 9.3), 입학식(3.2) 등)
  - ※ 교사의 관찰·평가를 통한 정성적 기록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 가능
- (수상경력)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내대회를 실시한 경우(16쪽 참조)에 한하여 기재 가능
  - ※ 단, '수상경력'의 기재 방법 등은 '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' 준용(수상경력 외 다른 항목에 참가사실 등 기재 불가)
- (인적·학적·출결) '21. 3. 1.부터의 사항을 기재
  - ※ 원격수업 기간 중 출결 기록(특기사항 포함)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  - ※ 불가피하게 원격수업 기간 중 운영된 시간표가 나이스에 등록된 시간표와 불일치하는 경우, 내부결재 등을 통해 실제 운영된 시간표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 필요
  - ※ 고등학교는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출결 특기사항에 (원격수업운영일수: △△일)로 일괄 입력하며, 0일인 경우에도(원격수업운영일수: 0일)로 입력함(상세 기준 및 방법은 [참고3] 참조).
- (전·출입 시) 원격교에서는 학생의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시 학생의 출결상황 및 활동내용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, 전출 시 관련 자료를 송부함

## VIII 향후 추진 계획

- 코로나19 감염증 상황 변화에 따라, 필요 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추가 대책 마련·안내

# 참고1

##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(등교 시 출결 관련)

구분	해외 신종 감염병	주요 대응 활동
관심 (Blue)	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감염병별 대책반 운영(일본)</u></li> <li>·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</li> <li>· 대응 역량 정비</li> <li>·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</li> </ul>
주의 (Yellow)	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중앙방역대책본부(일본) 설치·운영</u></li> <li>· 국외 환자 유입차단, 검역강화</li> <li>·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</li> <li>·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</li> <li>·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</li> <li>· <u>(지자체) 발생 및 인접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</u></li> </ul>
경계 (Orange)	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중앙방역대책본부(일본) 운영 지속</u></li> <li>· <u>중앙사고수습본부(복지부) 설치·운영</u></li> <li>· 검역강화외 지역사회 전파 차단 강화 (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)</li> <li>· <u>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</li> <li>- (행안부)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</li> </ul> </li> <li>·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</li> <li>· <u>(지자체) 발생지역 시·도 및 관할 시·군·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국 모든 시·도 및 시·군·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</li> </ul> </li> </ul>
심각 (Red)	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범정부적 총력 대응</u></li> <li>·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</li> </ul>

※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, 2020.2.23.)

## 참고2

##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(중수본, 6.28.)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명칭	■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■ 지역 유행/ 인원 제한	■ 권역 유행/ 모임 금지	■ 대유행/ 외출 금지
개념	■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	■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, 권역·중앙의 협조 필요	■ 권역 대응 한계,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	■ 전국적 방역의료 체계 한계 도달
기준	■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(주간 평균)	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	■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	■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
			■ 권역 중환자실 70% 이상	
보조지표	①감염재생산지수(R값),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,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,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, ⑥중증화율			
모임	■ 방역수칙 준수	■ 8명까지 모임 가능 (9인 이상 사전모임 금지)	■ 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사전모임 금지)	■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전모임 금지) *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
	■ 방역수칙 준수	■ 실내 동호회 활동 자제	■ 동호회 활동 자제	
외출	■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	■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	■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	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■ 출퇴근 등 외출 자제
			■ 22시 이후 외출 자제	
운동	■ 방역수칙 준수	■ 실내 단체운동 자제	■ 실내 운동 자제, 실외 단체 운동 자제	■ 단체 운동 자제, 개인 운동만 권장
행사	■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 10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5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행사 금지
집회	■ 5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5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시험	■ 방역수칙 준수 ■ 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관리 ■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			
다중이용 시설 (상업/서비스/국공립 시설)	■ 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(예:시설면적6㎡당 1명)	■ 이용인원 제한 (예:6㎡→8㎡당 1명)	■ 이용인원 제한 (예:6㎡→8㎡당 1명)	■ 이용인원 제한 (예:6㎡→8㎡당 1명)
	■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■ 1그룹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 24시 제한 *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	■ 1그룹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, 목욕장업, 수영장,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제한	■ 1, 2, 3그룹 22시 제한
	■ 집합금지 없음	■ 집합금지 없음	■ 집합금지 없음	■ 클럽(나이트 포함), 헌팅포차, 감성주점 집합금지
사회복지 시설	■ 비말 발생 활동(노래 춤 등)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 권고 ■ 이용인원 자율 조정(지자체 및 시설 판단) ■ 칸막이 설치 띄워 앉기 대화 금지 전제하 식당 운영		■ 비말 발생 활동(노래, 춤 등) 금지 ■ 칸막이 설치 띄워 앉기 대화 금지 전제하 식당 운영하 대체식 제공 또는 도사탁 전달 등 비대면 권장 ■ 이용정원 50% 이하로 프로그램 운영	
종교시설	■ 전체 수용인원의 50%	■ 전체 수용인원의 30%	■ 전체 수용인원의 20%	■ 비대면 예배·미사·법회만 인정
	■ 모임·행사·식사·숙박 자제	■ 모임·행사·식사·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100인미만)	■ 모임·행사·식사·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50인미만)	■ 모임·행사·식사·숙박 금지
	■ 성가대·찬양팀(독창 제외) · 통성기도 금지			